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대 전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11682 재산세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[redacted]공사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군수

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. 5. 6. 선고 2014구합102349 판결

변 론 종 결 2016. 1. 14.

판 결 선 고 2016. 1. 21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. 9. 8. 한 재산세 36,710원의 부과처분 중 34,100원을 초과하는 부분, 2013. 10. 16. 한 재산세 326,490원의 부과처분 중 303,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21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승훈

판사 김진선

판사 장민석